## **대한비뇨의학회 대구경북지부학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조 본회는 대한비뇨의학회 대구경북지부학회라 칭한다.

제 2조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본 지부학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본회원은 대구,경북도내에 거주하고 비뇨의학을 전공한 자로서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비뇨의학 전문의 과정을 수료한 자로 구성한다.
2. 준회원은 비뇨의학 전문의 수련 과정에 있는 자 또는 회칙을 찬동하여 본인 희망에 따라 가입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 4조 본회는 사무소를 대구광역시 혹은 경상북도에 둔다.

**제 2 장 조 직**

제 5조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이사: 1명

학술이사: 1명 재무이사: 1명 개원이사: 1명

자문위원: 본회 회장을 역임한 자 감사: 1명

제 6조 본 회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를 총괄한다.

제 7조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8조 자문위원은 본회 회장을 역임한 자가 맡게 되며, 본 회의 회무에 관하여 자문을 할 수 있다.

제 9조 총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재무 및 회 운영 전반을 관장한다.

제10조 학술이사는 본회 학술부분의 전반을 담당한다.

제11조 재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재무 및 서무전반을 담당한다.

제12조 회장 및 부회장은 총회결의에 의하여 선임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필요시 중임할 수 있다.

제13조 이사는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에 승인을 얻어야 하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3 장 운 영**

제14조 회원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결정하는 정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단, 만 65세 이상 회원은 면제).

제15조 납부한 회비는 적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 운영한다.

1. 회원소집

2. 회원 경조사시 부조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 회는 임시총회와 정기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12월 중에 개최한다.

제18조 회비의 차손이 발생시는 그 부족액을 임시회비와 찬조회비로 충당한다.

제19조 회비의 출납은 회장이 결정하고 중간보고는 총회에 보고한다.

**제 4 장 회 의**

제20조 본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학술집담회 포함)을 둔다.

1. 정기총회는 년 1회로 하고 일자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2. 임시총회는 이사회가 결정하여 소집할 수 있다.

**제 5 장 결 산**

본회 결산은 년 1회로 하고 이를 정기총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1. 본회 회칙의 수정은 총회에서 시행할 수 있으며, 총회에 참가한 회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할 수 있다.

2. 본회 기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3. 본회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실시한다.

4. 회원 경조사시 부조 및 강의료, 원고료 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본인상-조기와 30만원,

: 부모 및 배우자상-조기와 10만원 (최근 3년간 회비를 1회이상 납부한 회원으로 한다.)

: 지부학회 강의료-지부학회 내 강사 혹은 대구경북 소재의 강사-20만원

대구경북 외 원거리강사-40만원

**(본 회칙은 2019년 4월 12일 임시총회에서 개정되었음.)**